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20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김문수 · 오세희 · 박지원
이훈기 · 양부남 · 문금주
이강일 · 김남근 · 이광희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인구감소 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2조제1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인구과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인구과소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1의2. (생략)</p> <p><u><신설></u></p> <p>2. (생략)</p> <p>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략)</p> <p>② 시·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시·도의 <u>인구감소지역</u>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p> <p>3. ~ 8. (생략)</p> <p>③ ~ ⑦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1의2. (현행과 같음)</p> <p>1의3. “인구과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인구감소지역</u>·<u>인구과소지역</u>----- -----</p> <p>3.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